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967 판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9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9가단5151210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라미

피고, 항소인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노주

변론종결 2021. 6. 8.

판결선고 2021. 7. 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9가단515121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6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성, 판사 최은주, 판사 정 원